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4 6
----------	-------

제출년월일 : '97. 11. 22.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사유

고성군민상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심의회위원중 소속 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제8조제4항)

3. 본문

조례 제 호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중 "수상하지 않는다"를 "시상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제2항중 "공보계장"을 "문화공보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7조(수상자 결정)①군수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에정일 10일 이전에 군민상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는 <u>수상하지 않는다</u></p> <p>②(생략)</p>	<p>제7조(수상자 결정)①----- ----- ----- ----- ----- ----- <u>시상하지 않는다.</u></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①~③(생략)</p> <p>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소속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⑤~⑥(생략)</p>	<p>제8조①~③(현행과 같음)</p> <p>④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해당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11조(감사 및 서기)①(생략)</p> <p>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계장이 된다.</p>	<p>제11조(감사 및 서기)①(현행과 같음)</p> <p>②----- ----- <u>문화공보계장이</u> -----</p>